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문 1】

김갑동[주민등록번호: 870101-123456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3, 전화번호: 010-1234-1111, 전자우편: kkdong@web.com]은 2021. 9. 9. 법무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30점]

<다 음>

-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 두면서 간병에 경험이 많다는 최을서[주민등록번호: 790906-2897655,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91길11, 전화번호: 010-1234-2222, 전자우편: chulseo@ted.com]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 최을서와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을 받아 오고 있었는데, 2011. 4. 1.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 최을서가 침대시트를 교체하여 준다니면서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제가 침대에서 다 내려오기도 전에 최을서가 시트를 빼버리는 바람에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이하 'A사고'라 함).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저는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별첨 서류1). 최을서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최을서에게 간병을 받기 싫어진 저는 그 날까지의 간병비를 모두 지급하고 최을서를 해고하였습니다.
- 저는 A사고로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별첨 서류2), 치료비 전액을 받고자 최을서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던 차에 가압류만 하여도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2011. 5. 1. 최을서를 채무자로, 훈훈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별첨 서류3)을 받았습니다.

- 예금을 찾으러 은행을 방문한 최을서는 예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지만, 저는 최을서에게 압박감을 주려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이 기재된 서류를 받기는 하였으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2011. 9. 15. 가압류가 전부 취소되었고, 그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별첨 서류4).
- 올 초 결혼을 한 저는 부인에게 그 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A사고와 그 뒷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라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 2021. 3. 1. 최을서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고,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문자를 최을서로부터 받았습니다(별첨 서류5).
- 저는 간병계약 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최을서에 대해 여전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압류나 문자만 보내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이제 소송을 통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고, 최을서는 간병료도 1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입은 손해는 간병료 채권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압류나 문자를 보냈던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기도 하니 법무사님이 잘 살펴보시고 최을서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단,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미안하므로 지연 이자는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김갑동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김갑동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소장 작성일 및 접수일은 2021년 9월 12일로 하고, 작성 및 접수일이 공휴일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진료비 영수증의 세부항목은 고려하지 말고, 김갑동의 기왕증은 고관절 골절상이나 그 치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제합니다.
3. 김갑동이 언급한 사항과 별첨 서류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4.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5.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그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다만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할 것).
6. 사례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가공의 것이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은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진정한 날인이 된 것으로 봄).

[별첨 서류1] 진단서

진단서

등록번호	0192
연번호	2011

환자의 성명	김 갑 동	성별	남	생년월일	1987-1-1	연령	만 24
환자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3				전화	010-1234-1111	
병명	고관절 골절상					한국질병분류번호	3450
임상적 추정 ()							
최종진단(*)							
발행일	2011. 4. 1.			진단일	2011. 4. 1.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상기 병력으로 입원하여 2011. 4. 1. 수술을 시행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입원일	2011. 4. 1.			퇴원일	2011. 4. 1.		
비고				용도	법원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2011년 4월 1일

의료기관 갑을메디컬센터

주소 306-2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

전화 및 FAX TEL: (02)2222-7777 FAX: (02)2222-6666

진료과 정형외과

면허번호 제239호

의사 성명

장준형 (인)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 갑을메디컬센터

2011-4-1

[별첨 서류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단위: 원
등록번호	환자의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 진료		
0192	김갑동		2011-4-1 ~ 2011-4-1	[]야간 []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 [연월-일련번호]		
정형외과	301호		건강보험	2011-4-134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분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총액	30,000,000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환자 부담총액	10,000,000
- 중략 -				-	납부할 금액	10,000,000
합계	5,000,000	20,000,000	5,000,000		납부한 금액	1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34-253-999	상호	갑을메디컬센터		전화: (02)2222-7777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			대표자: 정혜자		
발급: 2011년 4월 1일			담당자: 김대리 (인)			

[별첨 서류3] 가압류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1카단1452 채권가압류
채 권 자	김갑동(87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3
채 무 자	최을서(790906-2897655) 서울 강남구 삼성로 91길11
제3채무자	주식회사 훈훈은행(102030-229999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3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1. 4. 1.에 발생한 간병사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금액 금4,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새빛보험회사 증권번호 제3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

판 사 성 법 률 (인)

- ※ 1. 이 가압류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 청구금액 : 4,000,000원
- 제3채무자 청구금액 특정
주식회사 훈훈은행(102030-2299999) 가압류할 금액 4,000,000원

채무자 최을서(790906-2897655)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가.예금금액이 많은 것, 나.만기가 빠른 것, 다.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끝.

[별첨 서류4] 가압류취소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1카단3290 가압류취소
신 청 인 최을서(790906-2897655)
서울 강남구 삼성로 91길11
피신청인 김갑동(87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3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카단1452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5. 1.에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1. 8. 15. 이 법원 2011카소23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피신청인이 그 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5.

판 사 최 민 법 (인)

[별첨 서류5] 문자내역

2021년 3월 1일

안녕하세요, 최을서씨.

2011. 4. 1.에 발생하였던 사고로 인해 제가 지출한 치료비 금 1천만 원을 언제 지급하여 주실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MMS 오후 1:30

김갑동씨.

저는 간병료도 1년 지나면 못 받아요.

10년이나 지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제소명령 받고서 소송도 안 걸었잖아요!

암튼 저는 그쪽에게 돈을 줄 의무 없습니다.

MMS 오후 4:05